

소장

원 고 총 22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김가연 변호사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50길 62-9, 402호 사단법인 오픈넷

피 고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김현웅

손해배상(국)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금 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들은 소외 에스케이텔레콤 주식회사(이하 'SKT'라 합니다), 소외 주식회사 케이티(이하 'KT'라 합니다), 소외 주식회사 엘지유플러스(이하 'LGU+'라 합니다) 이동통신사 3사와 각 이동전화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이동전화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자들로서 경찰청, 국가정보원,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등(이하 '이 사건 수사기관 등'이라 합니다)의 통신자료 제공 요청에 의한 통신자료 제공사실이 확인된 자들입니다.

나. 통신자료제공 제도 개요

통신자료제공 제도의 근거법률은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입니다. 이 규정에 의하면 전기통신사업자는 법원, 검사 또는 수사관서의 장,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수사, 형의 집행 또는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정보수집을 위하여 이용자의 통신자료(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아이디, 그리고 가입일 또는 해지일)의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하면 그 요청에 따를 수 있습니다.¹⁾

1)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통신비밀의 보호) ③ 전기통신사업자는 법원, 검사 또는 수사관서의 장(군 수사기관의 장, 국세청장 및 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재판, 수사(「조세법 처벌법」 제10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의 범죄 중 전화, 인터넷 등을 이용한 범죄사건의 조사를 포함한다), 형의 집행 또는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정보수집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이하 "통신자료제공"이라 한다)을 요청하면 그 요청에 따를 수 있다.

1. 이용자의 성명
2.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
3. 이용자의 주소

통신자료제공 요청은 해당 이용자와의 연관성, 필요한 자료의 범위를 기재한 자료제공요청서로 하여야 하며(법 제83조 제4항), 전기통신사업자는 통신자료제공을 한 경우에는 대장 등 관련 자료를 갖추고(법 제83조 제5항), 그 현황 등을 연 2회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법 제83조 제6항), 통신자료제공을 요청한 자가 소속된 기관의 장에게 대장 기재 내용을 알려야 합니다.

통신자료제공 요청은 증가 추세인데, 전화번호(ID)수 기준으로 2008년 상반기에는 2,530,280건(갑 제1호증 '08년 하반기 통신감청 등 협조현황 참조)이었던 통신자료 제공 건수가 2015년 상반기에는 5,901,664건(갑 제2호증 '15년 상반기 통신제한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등 제공 현황 참조)으로 증가해, 7년 사이에 동기 대비 제공 건수가 무려 233%나 증가했습니다.

다. 각 원고의 통신자료 제공사실 확인 내역

(삭제)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관련 법령

우리 헌법은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하고 있고(제10조 전문),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고 하여(제17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일찍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

구권을 규정한 헌법 제10조 제1문에서 도출되는 일반적 인격권 및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의하여 보장되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그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이다. 즉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공개와 이용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말한다.”라고 판시함으로써 헌법 제10조와 제17조에 근거하여 인정되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확인한바 있습니다(헌법재판소 2005. 7. 21. 2003헌마282·425(병합) 결정).

“개인정보”란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한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부호·문자·음성·영상 및 영상 등의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어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정보를 포함한다)를 말합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6호). 이 사건 수사기관 등이 제공받은 원고들의 통신자료 중 성명, 주민등록번호, ID는 이 정보 자체에 의해서, 주소, 전화번호, ID는 적어도 다른 정보와 결합함으로써 용이하게 당해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라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통신자료가 “개인정보”에 해당함은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나. 수사기관의 권한남용에 의한 법령 위반

통신자료 제공은 수사기관 등이 이용자의 통신자료, 즉 개인정보를 법원의 영장 없이도 취득할 수 있게 하는 제도로서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합니다. 또한 정보주체의 기본권을 침해함에도 불구하고 달리 정보주체에게 사전 또는 사후 통지하는 제도를 두고 있지 않아, 정보주체로서는 자신의 개인정보가 수사기관에 제공되었는지 여부를 확인 신청하지 않는 한 전혀 알 수 없으며, 제공된 정보에 오류가 있

4. 이용자의 전화번호

5. 이용자의 아이디(컴퓨터시스템이나 통신망의 정당한 이용자를 식별하기 위한 사용자 식별부호를 말한다)

6. 이용자의 가입일 또는 해지일

다고 하더라도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신자료 제공에 의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침해는 더욱더 크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대법원은 최근 통신자료 제공에 대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제공 요청에 따라 통신자료를 제공함에 있어서, 수사기관이 그 제공 요청권한을 남용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인적사항에 관한 정보가 수사기관에 제공됨으로 인하여 해당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관련된 기본권 등이 부당하게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서, “수사기관의 권한 남용에 의해 통신자료가 제공되어 해당 이용자의 개인정보에 관한 기본권 등이 침해되었다면 그 책임은 이를 제공한 전기통신사업자가 아니라, 이를 요청하여 제공받은 국가나 해당 수사기관에 직접 추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2다105482 판결).

다. 원고들의 손해의 발생

이 사건 수사기관 등은 원고들의 사건과의 연관성을 제대로 소명하지 않은 채 무차별적으로 원고들의 통신자료 제공을 요청함으로써 제공 요청 권한을 남용하였으며, 이로 인해 원고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수사기관 등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원고들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3. 손해의 범위

위와 같이 원고들은 이 사건 수사기관 등의 위법행위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당했습니다. 특히 통신자료제공이 수사대상을 특정할 목적으로 이용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는데 주로 이용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평

범한 시민인 원고들은 자신의 통신자료가 수사기관에 제공되었다는 사실을 안 것만으로는 자신을 내사자 내지 피의자로 하여 수사가 개시된 것인지 단지 참고인에 불과한 것인지, 그리고 피의사실의 내용이 무엇인지 등에 관하여 전혀 알 수 없기 때문에 더욱 큰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피의자가 특정되기 전 단계이므로 제공 요청시 또는 제공 이후 정보 주체들에게 통신자료 제공사실의 통지를 해준다고 하더라도 수사 등 형사절차의 진행에 지장이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이 직접 나서서 확인 요청을 하기 전까지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는지 알 수도 없었다는 점도 손해배상 산정을 함에 있어서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원고들이 이 사건 소송에 이르기까지 겪었을 정신적 고통과 피고의 위법행위의 중대성 및 금전적 손해배상이 기본권 보호를 위한 실효적 수단이 되어야 할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고들은 각 500,000원의 위자료를 청구합니다. 참고로 이 액수는 위 대법원 2012다10582 판결의 원심인 서울고등법원 2012. 10. 18. 선고 2011나19012 판결에서 법원이 통신자료 제공의 위법성을 인정하고 선고한 금액입니다.

4. 결 론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이 피고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손해를 입은 것은 명백합니다.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 6. 1.

원고들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가연

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